

# 지자체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한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정은파\* · 김형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무형문화재 조례 분석

- I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대한민국의 수립 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현대 사회의 모습이 크게 변화했다.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대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오면서도 현대의 문화 매체 발전과 더불어 최근 한류의 대중 문화에서도 큰 성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성한 발전에는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학계와 연구단체, 국가 및 지자체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전통의 재발견과 세계화, K문화를 전파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전통과 미래를 이어갈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무형문화재법에서의 보호 범주와 수혜 대상의 변동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재의 보호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현시대가 지녀야 할 올바른 문화정책의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갈등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법의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조례 역시 순차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 기존 선행연구를 보면, 다수의 경우에는 무형문화재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기나 타 국가 비교법과의 거시적 내용 차이 제시, 향후 예상 효과 및 부작용을 예측한 뒤,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한 부분에서의 지역, 문화재, 장르를 지정하여 해당 사례의 문화재 보호 및 대중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문화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상황인데, 이러한 지자체의 기초 역할 및 지원 근거가 될 조례에 대한 연구 역시 그만큼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하였다고만 알려진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1년에 시행되었다고 전한다(노현식, 2018, p. 4). 무형문화재법에서 의미하는 문화재의 의의와 정의를 살펴보면 인위적이거나

\* 주저자, 정은파 춤 예술원

\*\* 교신저자, 세종대학교 무용과 교수, knam414@hanmail.net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을 말한다. 이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들을 의미하고 세분화한다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등으로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적 가치 내지 문화재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경관성 등 어느 한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강민제, 2019, p. 35).

최근 2023년 10월 31일을 기점으로 문화재청 소관 법률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무형문화재법 개정안, 세계유산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최근의 법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최근의 조례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형문화재법은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만든 법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를 목적으로 학계와 전문가집단 그리고 전승주체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법이다. 이 법은 2011년에 본격적인 추진이 되었고 2012년에 들어서 ‘무형문화재법’ 10장, 61조, 부칙 8조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되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약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중이었다가 2015년 3월에서야 통과되었고 1년이 지난 후인 2016년 3월에 시행되었다. 무형문화재법의 변화와 한계점을 살펴보면 함한희(2023)의 논문에서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제도의 연속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국내외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둘러싼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심을 하다 결국 전자의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한다는 쪽에 기울었다는 것이다(함한희, 2016, p. 8). 허용호(2023)의 논문에서 원형과 전형에 관해 전형이 법률에서 ‘변화를 인정하는 가장 너른 개념으로서의 전형’으로 명문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극복 방안으로 세 가지 연관 개념인 ‘전형’, ‘핵심 가·예능’, ‘전승자 실기능력 조사지표’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한 2023년 법률개정에서처럼 무형문화재법이 변화로 인해 기존 갈등 및 모순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전담관 지정, 전문 인력 배치와 전담부서 설치,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거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의의는 기존 문화재 보호법과 무형문화재법과 세계문화유산법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하는 문화재청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기본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세부 조례가 미비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지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지역 내 국가지정 5개, 제주도 지정 20개, 향토무형유산 9개, 무형문화재 전수관 8개소의 지정 및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모 의원이 지적하였고(뉴스1, 2016),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도 체계적 관리 방안이 없고, 조례 자체도 허술함을 이수자 등이 지적한 바 있다(제주일보, 2019).

이처럼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은 새로운 국내의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보존하려고 하는 측면과 보존지역 거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내었던 부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보존과 공존 사이에서 세심한 법률적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그간 보존 중심의 법률이 점차 세밀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본 고에서는 우선 무형문화재법의 명칭과 의의, 처음 제정된 계기와 이후 변천사를 살펴보고, 이후 지자체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요소 간 차이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절차는 무형문화재법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실시한 뒤, 이후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조례 현황을 수집,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무형문화재법 의의와 보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관리 및 벌칙조항이 강화된 법률안이 시작되었는데 작성계기는 국립박물관 전시품이 도난당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노현식, 2018, p. 124). 위와 같은 일을 계기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을 따르는데,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관련조문, 제 2조 정의’에서 발췌).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범주는, 세대를 이어오면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이다(문화재보호법 제 2조 (정의) 제 1항 제2호). 무형문화재법이 법률개정을 거듭하면서 무형문화재의 범주의 확대에 이어져왔고 법률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알 수 있는데 무형문화재법이 문화재보호법을 모법으로 삼아온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협약에 의하여 범주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무형 문화재의 범위와 시기, 출처: 이학춘(2017)(재수정)

문화재 보호법 1962.1.10. 법률 제961호	무형문화재법 2016.3.28. 법률 제13248호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03년 11월 3일
1. 구전 전통 및 표현	문화재 보호법에 따름 (동법 제2조 제1항)	1. 구전 전통 및 표현
2. 전통적 공연 예술		2. 공연 예술
3.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3. 사회적 실행, 의식, 축제
4.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4.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5. 전통적 공예 기술
6.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법 제정을 통해 개념이 확장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러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함한희(2023)의 논문에서 무형문화재법 제정 배경을 유네스코의 협약에서 찾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 대하여 성찰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무형문화재와 다른 차원의 무형문화유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연구 및 정책 부재의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지현(2021)의 논문에서 무형 문화유산의 범주의 확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유네스코 협약에서 언급되는 구전 전통이나 전통 지식과 관습 등이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견해는 김재호(2016)의 논문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수정에 대한 의의를 범주에 확장이 있다고 한 견해와 동일하다. 이러한 범주의 차이는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제기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법률개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문화재 관련 법규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 조사지표가 마련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조사지표를 크게 전승가치(70점)와 전승환경(30점)으로 나누고 전승가치는 역사성(20점)·학술성(15점)·예술성/기술성(20점)·대표성(15점), 전승환경은 사회문화적 가치(20점), 지속가능성(10점)으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지표가 마련되었다. 엄승용(2022)의 논문에서 무형문화재 보존의 가치평가의 도구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종목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의 결정하는 과정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갖춘 가치 평가 도구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지정 종목 조사지표나 보존의 가치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재정된 여러 법률이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조례를 통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한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또한 개정된 법률로서 의미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전승활동을 충실해 수행하는지 조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지자체의 특성상 위원회,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수행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시와 언급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기준은 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향토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이재필의 논문에서 ‘지정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7개의 범주 중 전통적 공연, 예술, 전통기술 분야가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97건), 시·도 무형문화재는 71%(406건)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였다. 다만 가장 취약한 분야는 전통 기술로 보았고, 하나의 국가 종목이 여러 시,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을 넘는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이재필, 2018, p. 6). 이러한 부분은 기존 법률의 범주가 확장되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범주의 확장이 국가와 시, 도 무형문화재의 서열화를 만들 수 있어 보이는 점도 간과 되어선 안 된다.

이를 정리하면, 무형문화재의 범주 확장에 따른 보호 대상의 명확성 필요, 보호 대상 지정에 관한 객관성 및 기준의 다양성 확보가 보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무형문화재법에 대한 산재된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에서 문화재보호법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재법과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 조례분석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의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무형문화재법의 논의된 바를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한국무형문화재 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무형문화재 보호, 보유자 인정체계, 전승지원금, 정부조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재보호의 원칙’에 대한 논의 중 첫째로 허용호의 논문에서 원형과 전형에 관한 일련의 논의가 있었는데 2015년 제정된 법률 제 13248호 ‘무형문화재법’에 제3조 원칙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유형문화재의 ‘원형 유지’와 달리 무형문화재는 ‘전형 유지’가 기본 원칙임을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이때 추상적 접근에서 구체적인 법률조항이나 용어사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극복 방안이 마련되는데 이 방안의 핵심은 ‘변화를 인정하는 가장 너른 개념으로서의 전형’이고 3가지 연관 개념으로 ‘전형’, ‘핵심 가·예능’, ‘전승자 실기능력 조사지표’등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 메타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법률 조항으로 명문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허용호, 2023, p. 1, 6, 9).

〈표 2〉 원형과 전형의 개념적 차이

원형	전형
특정시기의 한 형태만을 규정하는 틀로서의 원형	어떤 부류의 본질적 특색을 나타내는 틀
원래 유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	무형문화유산의 속성인 ‘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변화의 속성을 모두 포괄
유형문화재에 적합한 개념으로 ‘원형유지’ ‘원형대로’ 표현된 형태	동일한 원리가 반복 적용될 때 발생하는 ‘내부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개념
무형문화유산에는 적합하지 않음	그 형태를 창출하는 ‘원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 무형문화유산이 박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형

출처: 허우호, 2016(재수정)

두 번째, 함한희의 논문에서 무형문화재와 전승공동체에 관한 논의이다. 이는 2016년 이후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자 하는 취지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두 가지로 첫째, 유네스코가 제안한 커뮤니티의 토대를 둔 무형문화유산 보호조치와 한국의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와는 다르다는 것이고 둘째로 무형문화재를 탄생시킨 마을 공동체를 그 종목의 문화 생태적 기반이라는 점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보았다(함한희, 2023, p. 12).



〈그림 1〉 지방무형문화재 정책 및 조례 지침안(이도훈, 2023, p. 94)

세 번째 이도훈(2023)의 논문에서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보면 지방무형문화재를 위한 여섯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첫째, 무형문화재법의 기준이 되는 ‘전형유지 원칙’과 ‘정의’를 포함하였고, 둘째,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매년 체계적인 전승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며, 셋째,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로 무형문화재만을 위한 독립 위원회를 통해 지자체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넷째,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해제’로 지속적인 지방의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다섯째, ‘전승실태 조사’로, 정기조사 조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전수교육 주체의 역량과 전승환경을 파악하며, 여섯째, ‘전승지원’으로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의 근거조항이자 전시 및 행사, 교육과 같은 여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다.

네 번째 논문인 김지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한국의 무형문화재법에 대한 비교 분석적 고찰에서 살펴보면, 크게 무형문화유산 범주의 확대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원칙인 원형과 전형 문제, 지정 제도 및 전수제도의 개선 등을 언급하였다(김지현, 2021, p. 43).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면 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두고 원형과 전형 간 대립, 지원체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전문위원회 설치, 지자체별 보존과 육성 간 방향성의 차이, 전수교육 및 전수제도 개선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무형문화재 조례 분석

#### 1. 연구방법 및 조례 현황

본 연구는 지자체 조례를 일괄 등록하고 원문과 시행령, 세칙은 물론, 제개정 변천, 입법예고 사실까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https://www.elis.go.kr/>)를 이용하였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례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표적으로, 강혜라·장우권(2016)의 지자체 정보공개 관련 조례 연구, 김광병(2013)의 인천시 사회복지 관련 조례 연구, 원혜연·나운빈(2022)의 문화도시 관련 조례 연구 등이 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각 연구의 핵심 키워드로 조례를 검색한 뒤, 조례유무, 담당 부서명, 내용구성, 별지서식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만, 논문 정보 제공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2023년 11월 기준, 약 103건의 논문이 출력되나, 이들 중에서도 문화재 분야의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분야는 다르지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존 연구의 분석틀을 참조하되, 주요 요소 도출은 본 연구의 주제 특성에 맞추어 변형하였다.

〈표 3〉 선행연구의 주요 요소 도출을 통한 분석틀 구축

선행연구의 연구자, 논문명	선행연구의 주요 요소(분석 기준)	본 연구에 반영한 주요 요소
원혜연·나운빈(2022)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문화도시 조례 현황 및 주요 요소 비교 고찰	조례의 유무, 법규명 차이, 연도별 개수, 기본법 언급, 위원회 구성, 센터 설치	조례의 유무, 법규명 차이, 연도별 개수, 무형문화재심의위원회 구성, 센터 설치 (=)전수교육시설 설치
강혜라·장우권(2016), 정보공개에 상관계수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정보공개 원칙, 집행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청구권자, 집행기관, 정보공개 일반안내,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 심의회, 조례의 유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추가로 활용	조례의 유무, 정보공개심의회(=)무형문화재심의 위원회 구성
오세민·박지현·이상호(2015),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치법규 내용에 관한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조례의 유무, 모집공고 대상, 적용시설 유형,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기준, 위원회 구성,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단계, 재위탁에 관한 사항	조례의 유무, 수탁자 선정기준(=)의무활동 요구 기준, 위원회 구성 (=)무형문화재심의위원회 구성
유정훈·한근희(2015), 개인정보보호 유형에 따른 지자체 조례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조례 현황, 조례 법적 의미, 조례 선정 기준, 개인정보 공개 거부감 항목	조례 현황, 조례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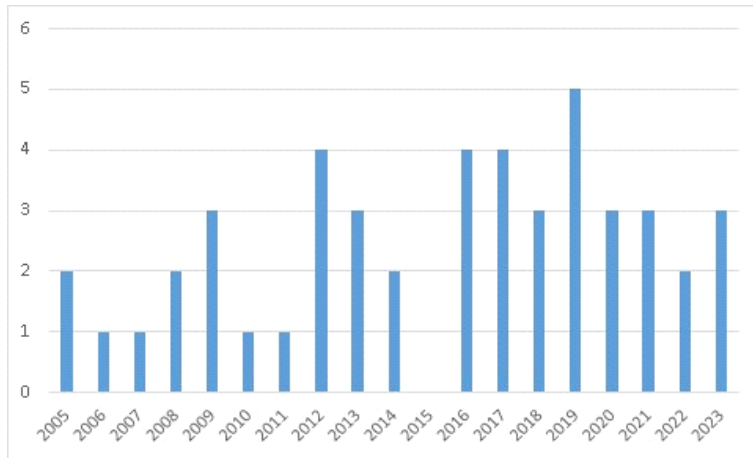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전체 자치법규’를 통해 ‘무형문화재’를 검색하면 총 122건의 자치법규명이 출력된다(2023년 11월 기준). 이는 조례 제목에 ‘무형문화재’가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의 지원에 관한 기초 법제도를 찾아 이를 분석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벗어난 75건은 제외하였다. 즉, 122건 조례 중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존(보전), 지원(진흥), 발굴, 육성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것을 중심으로 47건을 도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는 전국 지자체수인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에서 무형문화재 기초 조례가 설치된 곳이 47개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료 수집 대상인 기초 조례에서 벗어난 상세한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 제외된 조례의 키워드(총 75건)

제외 키워드	제외 건수
전수관(전수교육관, 전수회관, 전수시설) 설치	39건
시행 규칙 규정	28건
보유자 예우	4건
이수 심사	2건
공방 관리	1건
전승지원금	1건

제외 기준을 적용한 뒤 최종 도출된 47건의 무형문화재 조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05년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매년 2~3건 정도의 제정 건수를 보이고 있다. 2015년만 유일하게 제정 건수가 없었는데, 2015년에 기본 토대가 되는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각 지자체에서 반영

하기 위해 준비 과정을 가졌던 연유로 보인다. 이후 2016년~2019년까지는 매년 3~5건의 상대적으로 높은 제정 건수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는 다시 2~3건 가량의 낮아진 건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연도별 '무형문화재' 조례 제정수(총 47건)

## 2. 조례 명칭

전체 47건의 조례 중에서 지역별 구성은 도 8개, 시 31개, 구 3개(계양구, 송파구, 수성구), 군 5개(부여군, 임실군, 정선군, 평창군, 함안군)로 나타났다. 조례명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8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7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3개,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 1개 등으로 나타났고, 국가 및 도 무형문화재를 조례 명에 삽입한 경우로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었다. 조례명에서 '무형문화재'와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형 단어들은 보전 26개, 지원 26개, 진흥 22개, 보존 18개, 발굴 2개, 육성 2개, 전승 1개로 구성됐다. 즉, 무형문화재 조례는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전 혹은

〈표 5〉 전국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조례 개설 현황(47개)

자치단체	법규명
과천시, 광주광역시, 광명시, (경기)광주시, 공주시, 경상북도, 계양구, 남양주시, 논산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이천시, 임실군, 전라북도, 정선군, 통영시, 평택시, 평창군, 포천시, 하남시,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보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고양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여군,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송파구, 수성구, 울산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김포시,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시흥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조례



보존에 중점이 있어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법제도의 정비에 제정 의의가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인 목적으로 무형문화재의 진흥(발굴 및 육성 포함)이 가미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두 용어의 사전적 정의로는 보존의 경우,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긴다는 뜻으로, 유물이나 공문서 등 구체적 사물을 지칭할 때 쓰이고,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는 뜻으로, 보존과 개념적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생태계 보전이나 환경 보전 등 추상적 부분을 지칭할 때 더 많이 쓰이고 있다(매일경제, 2010). 따라서 법규명에서도 보존을 썼을 때는 뒤에 지원이 붙으면서 해당 지자체가 유물에 대한 보호의 개념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만든 반면, 보전을 썼을 때는 뒤에 진흥이 붙으면서 교육, 관광 등 문화재를 활용한 산업 확장까지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 3. 주요 요소 비교

조례 분석 결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의무활동 차이점이다. 대부분의 조례에서 무형문화재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해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의무활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고양시와 송파구는 예외적으로 의무활동 요구사항이 없었는데, 대신 지자체장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활동 관련하여 여러 연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의무활동은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 수혜에 따른 것으로, 크게 직접적 요구와 간접적 요구 방식으로 나뉘었다. 직접 요구의 경우, 의무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크게 3개의 의무활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사 및 축제 참여, 전승 및 교육, 전수교재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돼 있었다. 여기에 소수 지자체가 해외 공연이나 계승 목적의 행사를 추가로 언급했으며, 정선군의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에 대한 참여까지 유일하게 의무활동을 총 5개 언급하여 가장 많은 요구사항을 적시하였다. 추가로 기타 사항에는 일부 조례에 해당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적시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의무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부정기적이므로 의무활동 개수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의 의무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자체와 관련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 활동 내용(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의무활동)

지자체	의무활동 개수	조례 내용
고양, 송파	-	없음
안성, 안양, 안산, 경기광주,	3	1번.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번.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번.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천, 논산, 공주, 시흥, 평택, 임실, 평창	4	4번. 위 1~3번 + 연 1회 이상의 (해외)공연행사 개최 /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정선	5	5번. 위 1~4번 +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참여
일부(기타)	-	그 밖에 지자체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여

이와 달리,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의무활동 사항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17개(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이며, 주로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이들은 크게 무형문화재의 교육 활동과 공개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 내역에 대한 결과보고 제출의 순으로 보유자 및 단체에게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직접적 의무활동과 비교했을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부여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컨대 공연이나 전시 등 이러한 전통예술 활동을 통틀어서 연 1회 이상 대중 공개가 그러하다. 이는 시도 차원에서는 각 군구가 관리할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의무활동 역시 소속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구체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다음으로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은 모든 조례에 나타나고 있었고, 이들의 역할은 대체로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명칭은 대체로 비슷했으나 무형문화재위원회 19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 10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4개, 기타 무형문화재 지원 심의위원회, 무형문화재 보존위원회, 무형문화재 선발 및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 명칭에 ‘무형문화재’ 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향토 문화유산 보호위원회’(공주시)가 유일했고, 해당 조례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심의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실제 담당은 향토 무형유산 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적시되어 있었다. 그밖에 무형문화재 명칭이 들어간 위원회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수행기능은 향토 관련 위원회가 맡는 경우로 논산시, 부여군, 시흥시 등 다소 존재했는데, 이는 중복되는 기능이 많은 위원회의 추가 설치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만큼 무형문화재 조례와 향토문화유산 관련 조례 간 유사성이 높고 문화재 심의 범주도 겹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 용어 중, ‘무형문화재’와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지원 23개, 보존 20개, 심의 18개, 보전 6개, 육성 3개, 진흥 2개, 보호 1개, 선발 1개, 향토 1개, 문화 1개, 유산 1개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회의 위원수는 10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0명, 15명,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25명의 가장 많은 위원수를 명시했으며 20명이 넘는 지역은 모두 광역시도로 나타나 지자체 규모에 비례했다. 특히 전라북도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각각 25명, 15명, 11명,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하되, 이와 별도로 위원회 안에 다시금 각각 25명, 15명, 10명,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보조하면서 실질적 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고, 전라북도는 여기에 다시 5명 이내 소위원회까지 2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이 돋보인다.

한편, 무형문화재 조례 소관은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와 같은 문화 관련 부서에서 대부분 맡고 있었으며, 그 외의 경우, 문화재과/문화재정책과(서울시, 송파구, 부여군), 문화유산자원과(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화성), (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세계유산본부(제주도) 등 문화재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문화재 유적 등이 대규모로 발견되었거나 문화유산 관련 관광산업 등이 오래전부터 발달되어 있는 등 타 지역에 비해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셋째, 전수교육시설의 여부이다. 13개는 전수교육시설(혹은 전수교육관/전승교육관)에 대한 마련을 언급하고 있으며, 35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언급된 지역은 대개 광역시도로 재원 및 인구 규모가 크거나 혹은 무형문화재 관련 기반이 오래전부터 조성된 지역이기도 하다. 다만 부천시나 시흥 등 일부 지역은 앞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시설 마련을 언급했으므로 지자체장의 공약과 지역구성원의 의지가 보다 적극 반영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교육시설은 전통예술의 후학양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긴 어렵더라도 지속가능성 확보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실제 건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까지 세칙 등에서 함께 언급하거나 정책적으로 문화유산 발전 기금조성에서 세부 내역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힌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39건)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초 조례는 없으면서도 사업비 규모가 큰 전수관 설치에 관련된 조례만 제정한 것으로, 밀양시, 진도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밖에 특이사항으로는 지자체 조례 중, 유일하게 울산시가 무형문화재 진흥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마찬가지로 평택시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내 발전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례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자 지자체장의 공약사항 등과 관련된 것으로 무형문화재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성의 요소로 평가되며, 특히 기초 인프라 마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관련 예산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한 번에 사업 자체가 사라지는 일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형문화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타 모법 항목의 경우, 무형문화재법 40개, 문화재 보호법 8개, 소속 지자체의 상위 조례 7개로 구성돼 있었으며 조례만 단독으로 언급된 경우는 없었다. 또한 ‘무형문화재법’과 ‘문화재 보호법’이 함께 언급된 경우 1개, 언급은 되어 있으나 모법이 아닌 용어 정의를 위해 인용된 경우 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 7〉 무형문화재 조례의 주요 요소 비교

자치단체	위원수(명)	전수교육시설: 전수(교육)관	모법
전라북도	25	○	무형문화재법
서울특별시	20	○	무형문화재법
대전광역시	20	○	무형문화재법
제주특별자치도	20	○	무형문화재법
충청북도	20	X	무형문화재법
경기도	20	○	무형문화재법
강원특별자치도	20	○	무형문화재법
통영시	15	X	문화재보호법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인천광역시	15	X	무형문화재법
충청남도	15	○	무형문화재법
경상북도	15	X	무형문화재법
송파구	15	X	무형문화재법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11	X	무형문화재법
평택시	10	X	무형문화재법
안양시	10	X	문화재보호법
과천시	10	X	무형문화재법
안산시	10	X	무형문화재법
광주광역시	10	X	무형문화재법
여주시	10	X	무형문화재법 /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영주시	10	X	문화재보호법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함안군	10	X	무형문화재법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김포시	10	X	(용어 정의에 관한 부분에서만 언급됨)
광명시	10	O	무형문화재법
울산광역시	10	O	무형문화재법
평창군	10	X	무형문화재법
수원시	10	X	무형문화재법
남양주시	10	X	무형문화재법
세종특별자치시	10	X	무형문화재법
수성구	10	X	문화재보호법
화성시	10	X	무형문화재법
임실군	9	X	무형문화재법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9	O	무형문화재법
정선군	7	X	문화재보호법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경기)광주시	0	X	문화재보호법 / 무형문화재법
안성시	0	X	무형문화재법
성남시	0	X	무형문화재법
이천시	0	X	무형문화재법
포천시	0	X	무형문화재법
하남시	0	X	문화재보호법
부산광역시	0	X	무형문화재법
계양구	0	X	무형문화재법
논산시	0	X	무형문화재법
부여군	0	X	무형문화재법
고양시	0	O	문화재보호법
공주시	0	X	무형문화재법
부천시	0	O	무형문화재법
시흥시	0	O	무형문화재법

##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전국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기초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세부 요소 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지자체의 조례 현황으로써, 무형문화재 기초 지원 관련 조례의 확대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전체 지자체에서 약 21%만이 기초 지원 조례를 지니고 있었는데, 전수관 설치나 보유자 예우 등으로 범주를 확장하면 조례 개설지역과 중복을 포함하여 약 50건이 더 늘어나지만 설령 이를 그대로 합하더라도 전체 지자체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전형을 기반으로 무형문화재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었음에도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조례 신설이 다소 주춤해진 점을 감안하면 무형문화재 기초 지원에 관한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고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상징적으로 포함되는 전국 8도 조례와 역사적으로 지역 문화유산이 유명한 일부 지자체 사례를 제외하면, 많은 지자체에서 무형문화재 지원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 보다 많은 기초 지원 조례가 개설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수관 설치, 공방관리, 전승금 지원 등 지역별로 특화되거나 세부화된 추가 조례까지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주요 요소 비교 측면으로써, 의무활동이 보다 세분화되고 직접적인 형태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서 개설 현황에서 많은 지자체가 기초 지원 조례를 개설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이는 예산부족이나 지자체장의 무관심, 지역 내 문화유산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그간 단순 지원 중심의 정책을 집행한 결과, 지역의 무형문화재로 인한 해당 지역사회와 주민편익 부분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던 점도 들 수 있다. 이는 의무활동에 대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성과를 제출한 행태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바꿔 말해 지역사회와 주민이 원하고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의무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역의 환경과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고 수혜내역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의무활동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역시 주요 요소 비교 측면으로써,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맞는 전문성과 실질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47곳의 조례 설치 지자체 중에서 약 1/3에 해당하는 14곳은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또한 위원회가 설치된 곳에서도 전체 위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전문위원 및 소위원회 구성에 언급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무형문화재 인정범주가 늘어난 상태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들의 업무를 보조할 전문위원의 부재 역시 실질 업무진행 및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되, 위원회의 공정하고 정기적인 심사선정, 평가 활동을 위해 위원수의 증진,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촉, 정기실태조사 시행 및 결과 공유, 위원선출의 방식 공개 및 정기 교체 의무화, 전문위원 구성과 소위원회 신설 포함 등이 조례에 필요하다.

넷째, 마지막 주요 요소 비교 측면으로써, 전수교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전수 교육시설에 관한 조례 언급은 시설확충이라는 현실적 예산 문제 때문에 조례 개설 지역 중 2/3 가량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의 기초 지원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시설 마련은 문화유산의 전수와 전승, 그리고 대중화라는 조례 개설 취지의 핵심이자 기본 사안에 해당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의무활동만을 강요할 수 없듯이, 최소한의 활동 유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면서 의무활동의 세분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건강한 형태의 지역 무형문화재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 지자체 예산으로 전담 시설이 건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기금조성과 지역사회 후원을 통해 기존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제주도처럼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 일부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무형문화재법에서는 원형 대신 전형을 인정하고 기존 기예능 중심에서 확대하여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지정 범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느슨한 지정범위’라 불리는 해석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각 지자체의 조례 역시 원형이 아닌 전형에 대한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조례 신설에 참고한 모법 중에 전형이 아닌, 원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이 포함돼 있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지자체 입장에서 무형문화재의 범주를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특정 장르나 개인 및 단체 중심으로 지원을 했던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자, 단순 유지와 보존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닌, 진흥과 발전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려는 부분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로 인해 무형문화재 원형의 변형과 훼손이 커질 수 있어 원형과 전형에 대한 지원 체계를 분리하거나 의무활동의 결과로써 원형의 공연 및 전시를 전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심사 평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 조례를 다루면서 문화유산의 거시적 관점을 주로 다루었고, 무용, 공예 등 무형문화재의 세부 장르별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강인숙의 논문에서 무용 종목에 대하여 전승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면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방안을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강인숙, 2018, p. 66). 이러한 연구를 참고하여 향후에는 세부 장르별로 무형문화재의 활성화 사례, 조례에 특정 장르를 언급한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미시적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강민제(2019). 등록문화재 제도와 사유재산 조화에 관한 고찰. **고려법학**, 94, 31-62.
- 강인숙(2018).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무용 종목 전승 현장의 당면 과제. **무형유산**, 5, 49-69.
- 강혜라, 장우권(2016).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4), 293-312.
- 김지현(202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한국의 「무형문화재법」에 대한 비교 분석적 고찰. **문화정책논총**, 35, 31-57.
- 김용구(2005).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개편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준성(2022). AI시대에서 사회적 범죄예방을 위한 형법의 적용방안. **법학연구**, 85, 161-180.
- 노현식(2018). **한국문화재 보호법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오세민, 박지현, 이상호(2015).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치법규 내용에 관한 분석: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2), 165-176.
- 원혜연, 나운빈(2022).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문화도시 조례 현황 및 주요 요소 비교 고찰.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5(3), 35-56
- 유정훈, 한근희(2015). 개인정보보호 유형에 따른 지자체 조례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25(4), 331-342.
- 이도훈(2023).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학준(2017).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문화재 관련 법규의 재검토. **법학연구**, 20(2), 129-157.
- 이재필(2018).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지정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무형유산**, 5, 5-24.
- 허용호(2016). 무형문화재 독립 입법 시대의 무형문화유산 조사. **무형유산**, 1, 51-78.
- 함한희(2016). 전승공동체 보호의 문제와 무형문화재법. **무형유산학**, 1(1), 7-28.
- 고경호(2016. 10. 26.). “제주 무형문화재 관리 부실…조례 제정 시급”.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2813046>, 2023. 11. 15.>.
- 김유진(2016. 03. 27.). “‘원형’은 무엇이고 ‘전형’은 무엇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32507533270811>, 2023. 11. 15.>.
- 김종현(2010.02.04.). “[말글마당] 보존과 보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olumnists/4682025>, 2023. 11. 15.>.
- 김정은(2019.04.17.). “체계적 방안 없는 무형문화재 보전”. **제주일보**.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009>, 2023. 11. 15.>.
- 엄승용(2022). 무형문화재 조사지표 개발의 성과와 과제. **무형유산학**, 2022-11, 93-111.
- 함한희(2023). 무형문화재와 전승공동체에 대한 일 고찰. **무형유산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2023-4, 11-20.
- 유네스코(2003). 무형문화유산협약. <<https://heritage.unesco.or.kr/>, 2023. 11. 15.>.

논문투고일 2023. 11. 15.

심사일 2023. 12. 06.

심사완료일 2023. 12. 15.

## Research on Basic Suppor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rdinances

Joung, Eun-pa\* · Kim, Hyung-Nam\*\*

Joung Eun-Pa Dance Arts Center\* · Professor, Se-Jong University\*\*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suppor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earch method, previous studi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ies were analyzed. In detail, the principl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discussions on transmission communities, the current status of provincial and provinci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ssion policies were examined. After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as limited to 47 ordinances derived through search under the keywo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the 'elis.go.kr'. As a result,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ordinances related to basic support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second, compulsory activities should be strengthened in a more specific and direct form; and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should be mandated and appropriate expertise and substantive authority should be secured. Lastly, the expansion of training facilities is required.

Keyword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무형문화재), Local government(지방자치단체), Ordinance(조례),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문화재보호법), Cultural heritage(문화재)